

2023년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 (일반형 과제) 시행계획 공고

『2023년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&D사업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19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(일반형/선도형) 과제 구분 : 본 사업은 일반형 및 선도형 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, 선도형 과제는 향후 별도 공고 및 접수 예정입니다.
- (단계별 신청) 일반형 과제의 경우 1단계 R&D기획, 2단계 R&D로 구분되어 있으며, 1단계를 완료한 경우에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.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소상공인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 기획, 기술개발 및 실증* 등 전(全)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상점 보급 콘텐츠 확대 및 기술수준 제고

* 리빙랩 운영, 인증평가 및 지역 내 소상공인(가게·점포) 대상 스마트기술 보급

지원규모 : (2023년) 15억원, R&D 9개 과제 지원

- 일반형 R&D기획(1단계) : 최대 2개월, 1천만 원 이내
- 일반형 R&D(2단계) : 최대 12개월, 3억 원 이내

* 2단계는 하반기 내 별도 접수 예정

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
지원내용

구분		지원과제수	지원기간	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
일반형	(1단계)R&D기획	15개 내외	최대 2개월	1천만 원 이내	80% 이내
	(2단계)R&D	9개 내외	최대 1년	3억 원 이내	

* 일반형 R&D(2단계)는 1단계 R&D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 가능

** '코로나-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11호, '23.2.14)'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% 이상→ 20% 이상으로 완화

접수기간 : 2023. 4. 19. ~ 2023. 5. 22.

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
지원구분		접수처(전산 접수)
일반형	(1단계)R&D기획	www.smtech.go.kr
	(2단계)R&D	www.iris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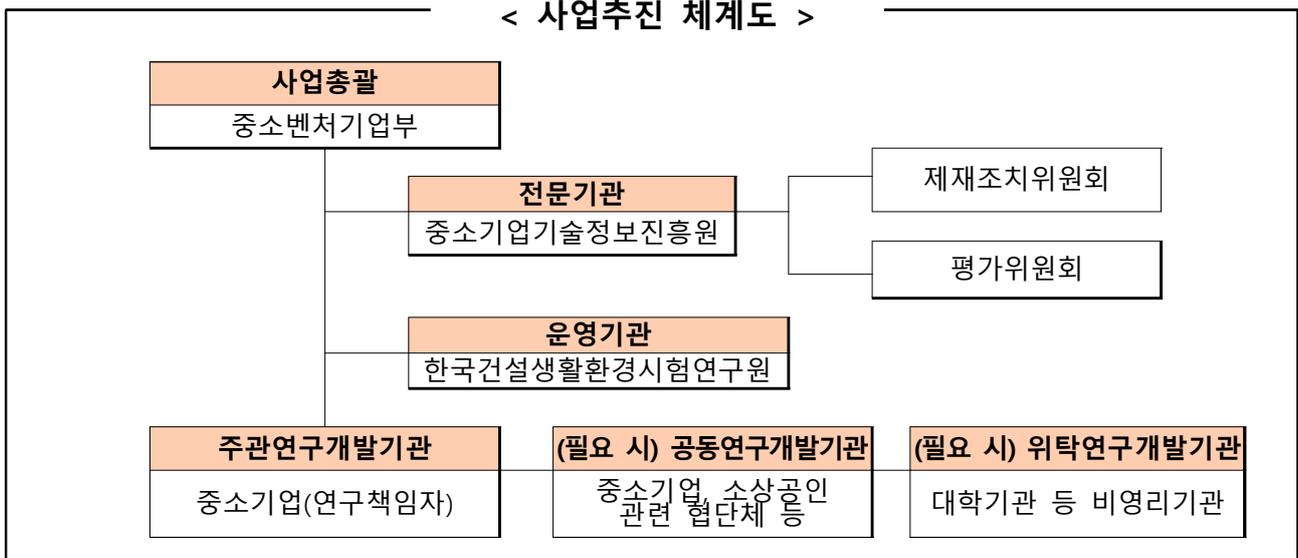
2. 추진근거 및 체계

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-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-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

※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

□ 추진체계



3. 상세 지원내용

□ 지원유형

- (지정공모 방식)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하는 기술제안요청서 (RFP : 별첨 자료)에 맞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

□ 지원내용

- (일반형 R&D기획) 소상공인 수요기반의 스마트기술 연구개발계획서*를 기반으로 성과확산,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&D기획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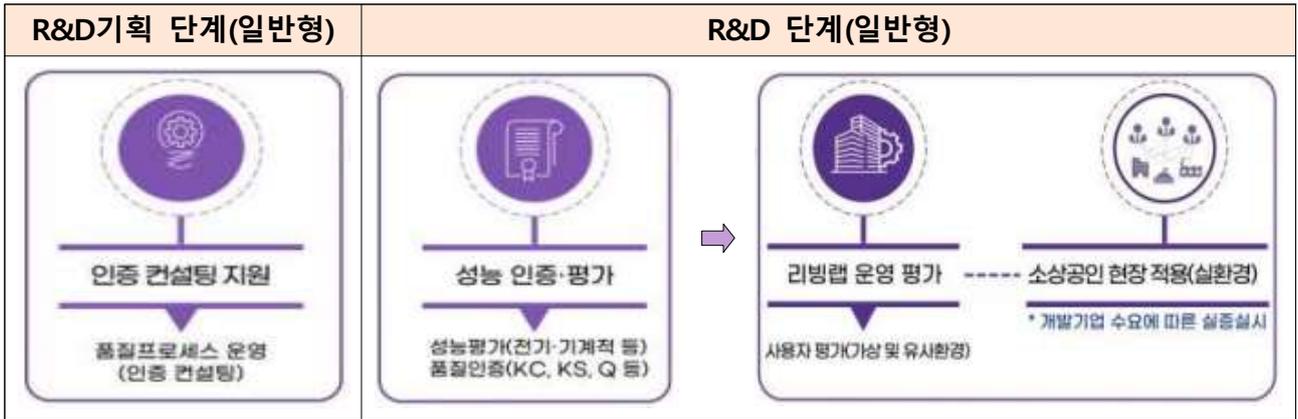
* 동 사업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작성하여 제출

- (일반형 R&D) 1단계에서 기획한 R&D과제의 수행, 실증 및 보급 지원*

* 1단계(일반형 R&D 기획) 결과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2단계 R&D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※ 실증지원 : 운영기관이 확보한 리빙랩에서 제품의 실제 수요(소상공인/소비자) 중심의 실증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성, 신뢰성 및 상품성을 확보 지원
 ※ 보급지원 : 동 사업 완료 과제 중 사업성이 높은 기술은 중소벤처기업부 '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'의 공급기술 풀에 등록하여 소상공인 보급을 지원할 예정

< 실증 지원 내용 >



4. 지원기준

□ 연구개발비

* 코로나-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11호, '23.2.14)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**20% 이상**으로 완화

- (정부지원연구개발비) 총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에서 지원
 - 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연구개발비의 20% 이상을 부담*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
- *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'현금'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의 10% 이상 부담

<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(예시/일반형R&D) 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총 연구개발비 합 계	개발기간
		현금	현물	합계		
1차년도	150	4	31	35	185	6개월 ('23.7월~'23.12월)
2차년도	150	4	36	40	190	6개월 ('24.1월~'24.6월)
합 계	300	8	67	75	375	12개월
총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(%)	80%	2.1%	17.9%	20%	100%	-

□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(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)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(사업 공고일 기준, 6개월 이전까지 채용된 연구자 포함)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

□ R&D 기술료 징수기준

- **(납부대상)** 최종평가 “완료”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공동연구 개발기관 포함,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 - * 기술료는 일반형R&D과제에 한하여 징수
- **(납부방식)**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
☞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

-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
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>> 고객지원 >> 이용매뉴얼 >> 시스템 이용매뉴얼 >> 8. 기술료 참고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공고 및 접수기간

구 분		기간	접수처
사업공고		공고	'23년 4월 19일
일반형	R&D기획 (1단계)	접수 기간	'23년 5월 3일 ~ 5월 22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
	R&D (2단계)	접수 기간	'23년 7월(별도안내 예정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www.iris.go.kr)
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기관의 문의로 답변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주일 전 이메일 및 온라인 문의 요망
 - * 또한, 오프라인 서류 제출 오류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~3일 전 제출 요망
 - ** 제출 마감 전까지 제출서류 등 제출 완료를 담당자의 별도 이메일 회신 받아 '정상접수' 확인 필요
- 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
 - *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제출서류(운영계획서 및 첨부자료) '정상접수' 완료 상태 담당자 메일 미 회신 시 당일 마감전 반드시 확인 필요(마감일 18:00 이후 접수 건에 대한 내용은 메일 회신 불가)

□ 신청 및 접수방법

○ (일반형)R&D기획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· 접수

- ☞ 신청방법 :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과제신청 →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→ 신청하기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- ☞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완료" 여부 확인 필요(접수 마감일 기준으로,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"제출완료"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)

-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-	요약문,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	연구개발계획서 본문1	<접수증 출력>

① 1단계 : 회원가입
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

② 2단계 :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

-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,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
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-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 하는 단계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업로드

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·접수 완료)
(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)
- ☞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완료" 확인 필요

○ (일반형)R&D

- 「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」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
- *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(smtech.go.kr)로 별도 신청·접수 불가

☞ 신청방법 : www.iris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업무포탈서비스 → 과제접수 → 신청 공고목록 → 해당 정부부처(중소벤처기업부),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검색 → 해당 공고 접수 클릭·신청하기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☞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: www.iris.go.kr → 로그인 → 업무포탈서비스 → R&D고객센터 → IRIS사용매뉴얼 → [IRIS R&D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☞ 신청서류 : www.iris.go.kr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고 → 정부부처 '중소벤처기업부' 검색 → R&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첨부 신청서류 확인 가능

- *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(smtech.go.kr)에서 별도 신청·접수 불가하나, 신청 서류 확인 가능

-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1단계	2단계		3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-	요약문,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	연구개발계획서 본문1	-
<p>① 1단계 : 회원가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<p>② 2단계 :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,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 <p>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 하는 단계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업로드 <p>④ 4단계 : 접수 '최종 확인' 및 '제출' 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드시, 입력된 연구개발계획 및 구비서류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확인 (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) 			

□ 필수 제출서류

- ☞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하고,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
- *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
- ☞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입력 시 대표자, 연구책임자,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입력 작성 필수

○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

연번	서 식 명	제출서류				
		필수	해당시			
①	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*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아래와 같이 기재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	본문1	○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일반형R&D기획 (1단계)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일반형R&D (2단계)</td> </tr> <tr> <td>'23.7.1~'23.8.31</td> <td>별도공지</td> </tr> </table>	일반형R&D기획 (1단계)	일반형R&D (2단계)	'23.7.1~'23.8.31	별도공지	본문2
일반형R&D기획 (1단계)	일반형R&D (2단계)					
'23.7.1~'23.8.31	별도공지					
	** (본문1) 20페이지 이내 작성,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*** (본문2)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					

연번	서 식 명	제출서류	
		필수	해당시
②	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** 법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*** 업력 산정 증빙서류 해당(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)	○	
③	중소기업 확인서	○	
④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(재무제표증명원) *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를 제출 **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택스 화면 캡처본	○	
⑤	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(신규 채용(예정) 인력이 있는 경우 필수제출)		○
⑥	우대가점 증빙서류 *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(확정)한 자료에 한함		○
⑦	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		○

* 신용상태 조회동의서,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동의서 등 온라인 시스템 입력

6. 신청자격

공통 자격
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개발(R&D) 역량을 갖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<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>

구 분	확인 근거(필수증빙서류)
중소기업 확인	○ 중소기업 확인서 * 확인서에 중소기업이 명시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*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→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

- (공동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대학, 연구기관
- (위탁연구개발기관)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
□ 신청자격의 검토 · 확인

- 운영기관·전문기관에서 신청과제의 요건 검토 후,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요건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·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
 - *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
□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

☞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·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·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,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(RFP)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③ 기(既) 개발/기(既) 지원 여부
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 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
 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-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

구 분	확인방법
의무사항 불이행	○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 과제수행 → 제재조회 → 중기 R&D사업 제재조회

⑤ 참여제한 여부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구 분	확인방법
참여제한	○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s.go.kr) → 과제참여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

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(단,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(공사)는 예외)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표준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㉑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
㉒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㉓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된 경우

* 단,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㉔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예외

< 관련 문의처 >

- ☞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☞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 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

㉔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- *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 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,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
- **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, 환전환우선주(RCPS)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(22년도) 표준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(21년도) 표준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로 판단

<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>

- ☞ 울산광역시 동구, 경상남도 거제시, 통영시·고성군, 창원시 진해구, 전라남도 목포시·영암군·해남군

< 관련 문의처 >

- ☞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
→ 주채권은행에 문의
- ☞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
→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(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)
→ 공장, 기계장치, 시설 등 구입(신축) 증빙자료

㉕ 선정평가(또는 현장조사)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표준재무제표 증명원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)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
- * 단,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표준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 (관할 세무서에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)까지 제출유예 가능

㉖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

7. 추진절차

☞ R&D과제 평가, 선정, 협약 세부일정 등은 추후 www.smtech.go.kr에 별도공지 예정



8. 평가기준

□ 요건검토

-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적합여부, 지원 제외사항 등 요건 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

* 제출된 증빙서류 등이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,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·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과제추천위원회 및 평가위원회

① 일반형 R&D기획

- (운영기관 과제추천) 운영기관에서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·적합성, 사업화 가능성 등을 서면(또는 대면) 평가를 통해 과제 추천
- (전문기관 평가) 운영기관에서 추천한 과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선정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* 종합평점이 동일하면 기술성>사업성>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>기술개발보유역량>자금집행계획>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

② 일반형 R&D

- (전문기관 평가)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선정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* 종합평점이 동일하면 기술성>사업성>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>기술개발보유역량>자금집행계획>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

□ 평가기준

○ 운영기관 평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기술개발 필요성(30)	소상공인 요구사항 부합정도	15
	기술개발 필요성	15
기술개발 적정성(40)	예산 및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실현가능성	15
	목표 제품(서비스)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역량	15
	사용자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의 적정성	10
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(30)	기술개발 결과물의 매출 및 고용 창출 기대효과	10
	기술개발 결과물의 판로 및 투자 확보 가능성	10
	아이디어-기술개발-생산-판매-사용-폐기 단계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가능성	10
합계		100

○ 전문기관 평가

구분	평가지표	평가요소
기술성 (40)	소상공인 스마트화 방향의 적정성(15)	·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기술 개발 필요성(수요, 가격 고려), 기술개발 내용 수준,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
	기술개발(기획) 접근 방법의 적정성(20)	· 기술개발(기획) 목표 및 개발방법, 개발기간,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
	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(5)	· R&D의 기술적 파급효과
사업성 (20)	사업화 계획의 가능성(10)	·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, 방법, 일정, 변수 대응의 적정 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
	기술개발(기획)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(10)	· R&D의 경제적 파급효과
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(10)		· 선행연구개발 이력(기관 자체 R&D, 국가지원R&D) ·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, 이전 국가지원R&D 과제와의 차별성
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 (25)	연구개발역량 (15)	·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(연구팀 구성 계획, 연구책임자, 참여 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) ·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, 논문 등 기술적 기반
	연구윤리 (10)	· 연구윤리(연구개발비 부정사용,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)
자금집행계획(5)		·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

□ **지원과제 확정**

- 전문기관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,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* 단, 2단계 일반형 R&D과제의 경우는 1단계 일반형 R&D기획과제 참여 기관 대상으로 별도 선정 및 지원과제 확정

□ **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**

-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

□ **가·감점 (전문기관 평가 시 적용)**

- (공통)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부여(접수마감일 기준)
- (추가사항) 아래 표에 따라 가점 부여

적용 대상 과제	가점 요건	가점	비고
전 과제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기업	1	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
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* 최종평가 결과 '우수'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	1	
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	2	
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	2	
	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	1	
	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*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및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	1	
일반형R&D기획	2022년 스마트기술 피칭대회 입상 기업 가점	3	
일반형R&D	2022년 스마트기술 피칭대회 입상 기업 가점	3	

*각 가점사항은 중복적용 할 수 없음(※예시 : 스마트피칭대회 입상 기업이 장관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만(피칭대회 입상 가점 3점) 적용

9. 유의사항

□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

- ① 본 사업은 R&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
- ② 가점 및 감점은 본 공고문과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 지침」을 따르며,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
- ③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,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(단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)
 - * 단,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, ②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과제,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,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(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),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,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로 미포함, ⑦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
 - ** 소재·부품·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
- ④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함
-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를 등록하여야 함
 - *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·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·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, 장비 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·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
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8조 및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름
- * 1억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기정통부)에서 실시하나,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

☞ 연구시설·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, 시험, 계측, 기계 가공, 제조, 전처리, 영상, 교정, 데이터 처리,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

- ⑥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대표이사, 연구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
 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,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음(단, 3개 이내 경쟁업체만 제시 가능)
- ⑧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(출원·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수요처와 주관연구개발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7조 (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)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연구결과물(지식재산권, 시제품 등)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의(별도 계약 등에 의해 정함)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(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부분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)
- * (예외)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가능
- **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) 및 시행령 제32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에 따름

10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	시행계획 공고	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선정평가, 협약체결, 유의사항, 연구개발비 지급 등	044-300-0673, 0674
운영기관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신청·접수, 운영계획 작성, 과제추천, 실증사업 등	02-6951-8632, 02-3415-8819

☞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<http://www.iris.go.kr>
-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
□ 기타사항 : '23년 4월 중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(온라인)

* 사업설명회 일정 별도공지 예정(SMTECH 공지 예정)